통합공고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산업부 고시 제2020-212호, 2020.12.10)	개 정 안 (산업부 고시 제2021-165호, 2021.10.08)
제8조(별도규정 품목) (생 략) 1. ~ 27. (생 략) 28.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제8조(별도규정 품목) (현행과 같음)** 1. ~ 27. (현행과 같음) 28. ---------- ---------- ---------- ---------- ---------- ---------- 제22조 및 제23조---------- ---------- ----------.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연구·시험 목적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는 제31조를 따르되, "수입업 신고증"은 "제조업 허가증"으로 "수입품목"은 "제조판매품목"으로 본다.
제106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1. ~ 2. (생 략)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명백하고, 앵무새·비둘기·고양이 등 애완용으로의 사육이 일반화된 동물로서 반입수량이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증식 증명서를 첨부할 것	**제106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 ---------- :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나) 당해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나. 당해 야생생물 등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생 략) 라.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 세로 11.7㎝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함) 1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만 해당한다) 1부 나. ~ 마. (생 략) 바.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증식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1부 <신 설>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현행과 같음) ③ ---------- 제29조제1항----------.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 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1부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 견본을 말한다.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외)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제183조(적용범위) ①이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제183조(적용범위)** ----------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3.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성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3.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84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한다.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경우 2. (생 략)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 5. (생 략) 6.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7.~ 9. (생 략) ② (생 략)	**제184조(수입검역)** ---. --.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묵호항 2. 공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현행 제3항과 같음) 3. (삭 제)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시행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이 지정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한다.

제199조(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9의 국외반출승인 대상 농업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1조(수입기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함)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살생물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 3.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4. (신설) 5. (신설)	**제221조(수입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 ---------- ---------- ------ 3.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1. ---------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222조(수입요건 확인) 제2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생략)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통지서 3.~ 4. (생략)	**제222조(수입요건 확인)** ---------- ---------- ---------- ----------. 1. (현행과 같음) 2. ----------제9항---------- ---------- ---------- 3. ~ 4. (현행과 같음)
제223조(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	**제223조(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

전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 2. (생략)	**전기준 등)** ---------- ---------- ----------. 1. ---------- ----------제4항---------- 2. (현행과 같음)
제226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생 략) 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	**제226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현행과 같음) 1. ----------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른 ---------- 2. ---------- 제27조---------- ---------- ----------
제227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1. ~ 3. (생 략)	**제227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 ----------별지 제16호 서식---------- ---------- ----------.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